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4856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458호, 2022. 2.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4856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6. 연구실안전관리사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4856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1. 12. 31.>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 교육 · 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 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 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li> <li>·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 항</li> <li>·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li> </ul>
		나.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 규로 채용된 연구 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 개월 이내)	
	근로자 가 아닌 사람	다. 대학생, 대학원 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 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 개월 이내)	
2. 정기 교육 · 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li> <li>·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li> </ul>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 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 간 이상	

3. 특별안전 교육·훈 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 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li> <li>•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li> </ul>
----------------------	--	--------	--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